



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(임시회)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■ 의안번호 제4194호

2024. 8. 27.

교육안전위원회

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
심사보고서

I.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4194호
- 발의자 : 홍나영 의원 외 16명
- 발의일자 : 2024년 8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9일
- 상정일자 : 2024년 8월 27일
- 의결일자 : 2024년 8월 27일
 -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설립('23. 3.)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복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 및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진로교육법」 (붙임 3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 (붙임 4)
- 기타 : 현행조례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」) (붙임 5)

III. 검토의견

1. 개정목적

-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의 진로교육원이 2023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진로교육원을 지역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(안 제5조) 진로교육센터 설치·운영

-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지역진로교육센터로서 진로교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함

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을 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3. 검토의견

-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기존의 직업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정확한 직업 인식을 확보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가고 있음
- 본 조례안은 「진로교육법」에 따라, 세종시 관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, 세종시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

- 기존 제5조 제①항에는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번에 신설되는 제②항에는 진로교육원을 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은 학생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2023년 3월에 개원한 기관으로, 진로교육원이라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역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여, 체계적인 진로 탐색 및 진로상담, 진로체험 등을 통해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더불어 진로교육원의 가치는 ‘삶과 배움을 주도적으로 연결하는 진로 교육’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창의적인 진로 개척을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됨

IV. 토 론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: 없음

VIII. 기타사항 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붙임 1. 개정조례안

붙임 2. 신·구조문 대비표

붙임 3. 관계법령

붙임 4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붙임 5. 현행조례

문 의 처
044)300-7510

불임 1**개정조례안**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센터로 지정·운영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불임 2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진로교육센터 설치 · 운영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제5조(진로교육센터 설치 ·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을 센터로 지정 · 운영할 수 있다. 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관 계 법 령**☒ 진로교육법**

제16조(지역진로교육센터)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,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,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, 진로체험 운영·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일부 비용 발생 요인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 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

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진로교육법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감의 책무)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진로교육기본계획)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·지원
3.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4.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진로활동실)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,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진로교육센터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「진로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
2.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
3.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
4.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·지원

6. 지방자치단체, 진로교육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7.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센터에는 센터장과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하고 자문한다.

1.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
2. 진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

3. 제5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(이하 “진로교육원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3.7.10.>

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진로교육원장, 중등교육과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

나. 지방자치단체, 대학 및 관계 기관 전문가

다. 진로전담교사

라. 지역사회단체 진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

마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⑦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협의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.

⑥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, 대학,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